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6-42호
2026. 9. 4.(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공 고(5)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공고 제2026-919호) 1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922호) 3
- 2026년 3분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공고 제2026-929호) 8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930호) 12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941호) 17

공 략									
-----	--	--	--	--	--	--	--	--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산22-1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인 지역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추가)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본)		
목상동	579	-	-	-	- 1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 2 -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 3 -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 4 -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출금지기간 : 공고일로부터 해제시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도

□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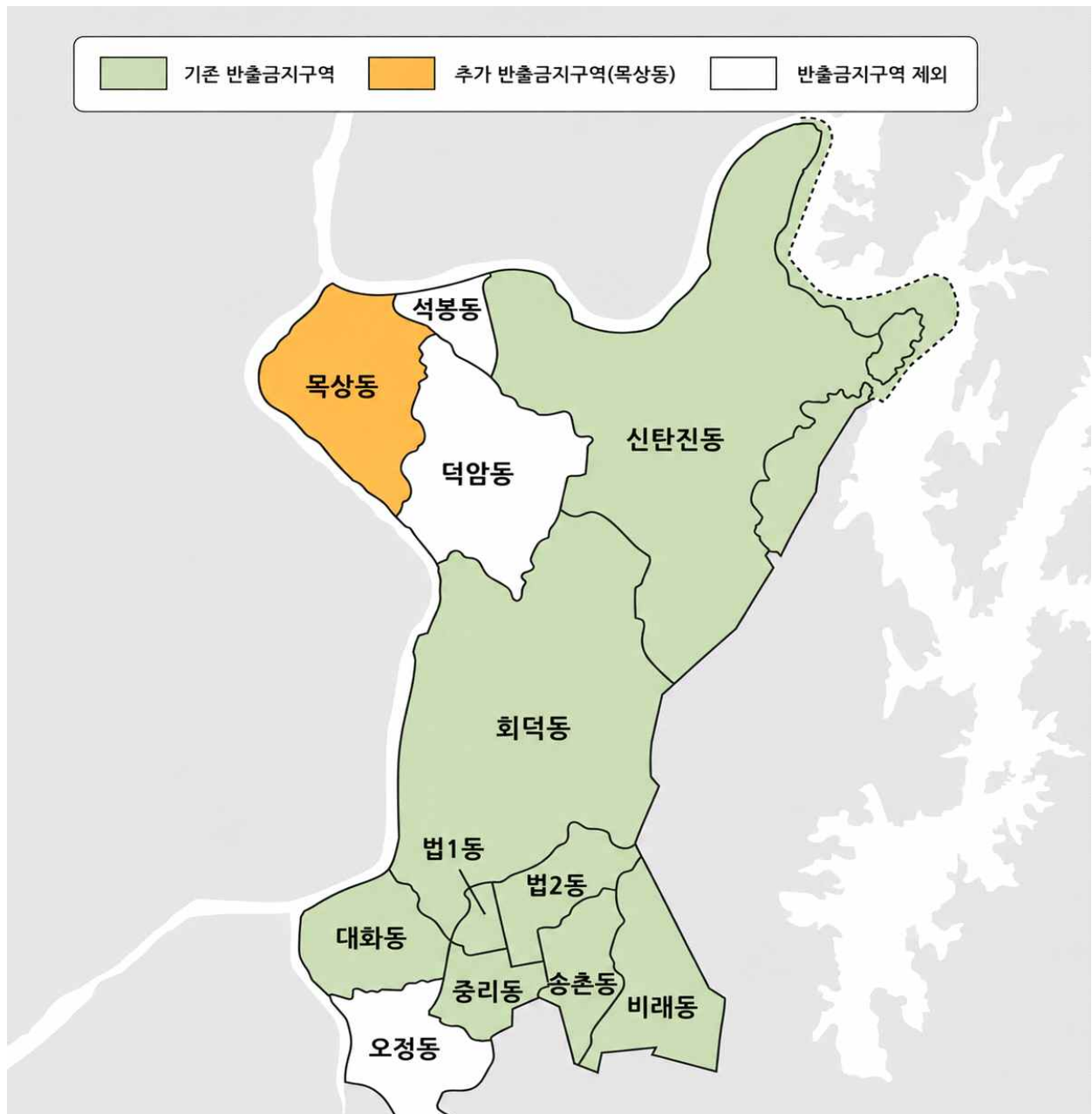
- 기존: 신탄진동, 회덕동, 법1동, 법2동, 대화동, 중리동, 송촌동, 비래동
- 추가: 목상동

□ 면적: 5,823ha

- 기존: 5,244ha
- 추가: 579ha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산22-1

(재선충병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포함되는 행정동리의 전체 구역)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같은 법 제16조
 -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 2026. 9. 4. ~ 9. 18. (14일간)
4. 공고대상 :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 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환경과 (☎042-608-6866)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6. 10. 2.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 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부과통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6.9.30.)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환경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 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라.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6.9.30.)까지 가산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마. 아울러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042-608-6866)

[별첨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감경액)	반송사유
김*호	290무7***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154번길 16, 60*호(상서동, 반석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폐문부재
장*희	33오3***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72, 10*동 26층 260*호(신아산모아엘가비스타1차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폐문부재
이*제	233구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3, 1**동 1***호(신탄진동,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1단지)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100,000 (80,000)	폐문부재
박*남	214수9***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로 94, 70*동 100*호(봉명동, 금성백조에미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80,000)	폐문부재
김*관	356로6***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마장2길 *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100,000 (80,000)	폐문부재

[별첨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송*삼	12가9***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80, 10*동 80*호(신일동, 한라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전*식	48라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209번길 *, 30*호(둔산동)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100,000	폐문부재
김*자	81수5***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154번길 16, 10*동 5층 50*호(상서동, 반석아파트)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100,000	폐문부재

[별첨3]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권*진	대전80배4***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340번길 20, 10*동 1***호(대성동, 삼익세라믹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104,200	폐문부재

2026년 3분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신청기간: 2026. 9. 7.(월) 09:00 ~ 2026. 9. 30.(수) 18:00
2. 신청대상: 착한가격메뉴*가 대덕구 평균가격** 이하인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 업소 이용객이 자주 찾는 메뉴
** 인근 상권을 기준으로 산정(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가격동향 참고)

[신청 제한]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공고일 기준)**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3. 신청방법: 방문(점심시간 12:00 ~ 13:00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또는 이메일 접수
가. (방문 접수) 대덕구청 별관 2층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나. (이메일 접수) whdaud1008@korea.kr
※ 이메일 신청 시 접수확인 전화 필수(☎ 042-608-6925)

4. 구비서류

- 가.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 【붙임1】
-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다.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2】

5. 지정기준

가 격 (25점)	착한가격메뉴*가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 업소 이용객이 자주 찾는 메뉴
위 생 청 결 (25점)	주방, 매장 및 화장실 등의 위생 및 청결 수준
가 점 (3 점)	지역화폐가맹점 여부, 지역사회 공헌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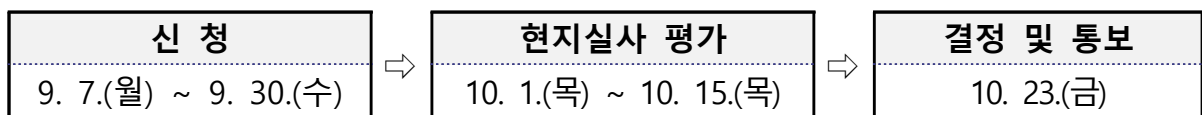
➔ 점검표 기준 평점 총합이 40점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 단,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지정 할 수 있음

6. 지정혜택

- 가.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공 / 대전광역시
- 나. 행정안전부·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업소 홍보
- 다. 물가안정 기여에 따른 인센티브(운영물품 또는 운영비) 지급

7. 지정절차 ※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경제과 경제팀(☎ 042-608-6925)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업소 일반현황	업 소 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 번호
	업 종			전화번호
	최초영업일	※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 지 않은 업소는 신청 불가		(042)- (010)-
	소 재 지 (도로명)			
주요 취급품 가 격	품 목	가 격(원)	품 목	가 격(원)
정책 이행 및 호응 (V표시)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불이행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불이행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 해당 ☐ 미해당
	최근 1년 이내 휴업 여부			☐ 해당 ☐ 미해당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신청일기준)			☐ 해당 ☐ 미해당
위생·청결	지역화폐 가맹점			☐ 해당 ☐ 미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여부			☐ 해당 ☐ 미해당
지역사회 공헌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청소년 할인 ☐ 특정시간대 할인 ☐ 해당없음		
	표창 여부 (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시장·도지사·장관 ☐ 자치단체장(구청장) ☐ 해당없음		
기타	영업 시간	/ 휴무일		
	배달 여부	☐ 가능(☐ 어플명: / ☐ 직접배달) ☐ 불가		
	주차 여부	☐ 가능(☐ 주차장 존재 / ☐ 갯길주차 가능 등) ☐ 불가		
	편의 시설	☐ 무선인터넷(와이파이) ☐ 단체이용석 ☐ 예약 ☐ 유아시설		
※ 첨 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완납증명서, 위생등급 결과서(해당 시) 각 1부.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아래의 목적을 위해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착한가격업소 재지정 및 신규 지정 가능 여부 조회
수집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6. 9. 4. ~ 9. 18. (14일간)
4. 공고대상: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농생명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6. 10. 5.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부과통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026. 10. 31.)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자원농생명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라.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026. 10. 31.)까지 가산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마.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농생명과 ☎042-608-6834

[별첨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감경액)	반송사유
더*페*스 주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주라위길 60-*, *층 10*호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40,000)	폐문부재
최*환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200, 10*동 140*호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40,000)	폐문부재
김*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9*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500,000 (400,000)	주소불명

[별첨2]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과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렌트카(주)	부산광역시 영도구 하나길 74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김*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71번길 4*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오*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71, 10*동 120*호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정*용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동중리2길 12, 20*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김*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290번길 20, 20*동 70*호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별첨3]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최*창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70, 11*동 30*호	담배꽂초 불법투기	52,100	폐문부재
김*준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남부로 5825-*	담배꽂초 불법투기	52,100	폐문부재
송*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282번길 28, 30*	담배꽂초 불법투기	52,100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 - 9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에 따라 해당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농지 현장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 목: 농지 현장조사 협조요청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가. 현장조사: 「농지법」 제54조의4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6. 9. 4. ~ 9. 18. (15일간)

4. 공고대상: 노*이(대전 대덕구 산도로**2번길 4*)

5. 공시송달 내용

가. 「농지법」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에 따라 해당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농지 현장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예정된 조사일시(2026. 9. 22. 10:00~12:00)에 현장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농지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며, 「농지법」 제64조(과태료)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농생명과(☎042-608-4073)